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 경과

- 제 출 : 2007. 3. 30.(사천시장)
- 회 부 : 2007 3. 30.(총무위원회, 의안번호 제28호)
- 상 정 : 2007. 4. 16.(제113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총무과장 엄정기)

가. 제안이유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시·군·구 조직 개편에 따라 2007. 2. 20자 개정된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거, 기구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기획담당관” 을 “기금업무담당부서장” 으로 개정함(안제7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진기)

- 개정조례안은 2007. 2. 20자로 개정된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거 기구명칭을 정비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제7조제1호 및 동조례 제20조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금업무 담당부서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는 2007. 2. 20자로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구의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업무조정으로 인하여 부서의 장이 변경되어 조례상 잘못 표기된 부분을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사천시 시보 조례」 등 12개 조례가 대상임.

■ 검토의견으로는

-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부칙 제2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다른 조례의 개정은 「사천시 시보 조례」 등 12개 조례 중 제2항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 제5조제1항제5호는 조례 개정으로 2007. 4. 2자로 삭제되었으므로 제외하고, 그 외 11개 조례는 조례별로 개정 조례의 입법을 따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나의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방식도 용어 등 경미한 사항의 정리적 개정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제처 「자치입법심사기준」을 참고해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 없음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일자 2007. 4. 16

제안자 김석관의원 외 5명

1. 수정이유

개정안의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중 제2항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5호는 2007. 4. 2자로 삭제되어 조정코자 함.

2. 주요골자

개정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항 「사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삭제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항은 삭제한다.